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534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정환 의원 외 17명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3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03일

라. 상정결과 :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(2019년 9월 3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정환 의원)

○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 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 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운영 박물관에 서의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개정안의 취지

- 동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의사상자 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동 조례안의 취지는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사상자 등의 문화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.

나. 의사상자 등의 법적 지원 근거

1) 의사상자 등의 정의규정

○ 의사상자(義死傷者)에 대한 정의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우를하고 있음.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2. "의사자(義死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 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3. "의상자(義傷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4. "의사상자"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.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- 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- 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2) 의사상자 등의 지원 범위

-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,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)임.¹⁾
- 의사상자 등에게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 조의2에 따라 고궁, 국공립공원, 국공립 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가 운영 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.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별표 3]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(제18조제3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요금 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는 제외한다)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
¹⁾ 보건복지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이트
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

○ 서울시는 위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- 2.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,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
- 3. 명절(설, 한가위)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
- 4.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
- 5.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따라서 동 조례안처럼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 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사료되며,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(9월4일 심의 예정).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장	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
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	
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	
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	
있다.	
1. 시가 설치、관리하는 문화재 관람	1. 「법」 제15조, 시행령 제17조
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	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
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	용지원과 시가 설치、관리하는 공영
요금 감면	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○ 또한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5조제1항은 무료관람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박물관의 관람료는 국빈, 외교사절단,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, 조사연구자 등 공무수행 하는 자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특정 연령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명예시민 등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, 의사상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〈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	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	
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	
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
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수행자	1. ~ 3. (현행과 같음)
2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. 의	
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	
또는 가족	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	
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	
또는 가족	
<u>〈신 설〉</u>	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
	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
	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
5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5. ~ 11. (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
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	지와 같음)
6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	
7.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	
8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	
가족 포함)	
9.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	
10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	
11.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	
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	
②、③ (생 략)	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-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박물관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지원하는 동 조례안은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 지로서, '박물관 도시 서울' 이라는 서울시립박물관의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됨.
-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문화향유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사상자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특히 문화본부는 '19년 개관예정인 서울생활사박물관, 서울우리소리 박물관과 '20년 개관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, 박물관을 통한 시민의 일상 속 문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동 조례안을 통해 전 시민 균등한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,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- 5. 토론요지 : 없음.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534 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
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
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
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
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운영 박물관에서의 관람료면제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 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시 운영 박물관 관람료 면제의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5조제1항4호의 신설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1) 신 · 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	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
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	
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	
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
	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
	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
	사람
<u>4</u> . ∼ <u>10</u> . (생 략)	<u>5</u> . ~ <u>11</u> . (현행 제4호부터 제10
	호까지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